

# 강사 임용 규정

전문제정 2019.07.24. 개정 2021.11.04. 개정 2022.04.12. 개정 2025.10.27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교법인 해전학원 정관 제39조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 50조, 교원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5.10.27.>

## 제2조 (임용)

강사는 이 규정에 정한 채용절차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## 제3조 (임용자격)

강사의 임용자격은 ‘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서 정한강사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.

## 제4조 (임용시기 및 임용기간)

강사의 임용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5조 (임용취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폐강 등의 사유로 신규 임용된 강사의 담당과목이 없어진 경우
2. 논문표절,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
3. 강사의 임용자격에 미달된 경우

## 제6조 (채용)

① 강사의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(이하 “공채”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(이하 “특채”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1. 공채가 불가능한 교과목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
  2. 학기 중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
- ② 총장은 해당 학과로부터 채용분야 신청을 받아 본교의 운영방침, 학과의 사정, 해당 교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채 및 특채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특별채용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는자 중 계열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채용한다. <개정 2021.11.04.>

## 제7조 (채용광고)

교내신문 또는 본교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8조 (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)

- ① 강사의 지원 자격은 이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.
- ②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강사 지원서(소정 양식)
  2. 최종학위증명서
  3. 교육 및 연구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4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

## 제9조 (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)

-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과별 심사위원회를 두고,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계열장 및 학과장으로 한다. <개정 2021.11.04.>
- ②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심사는 [별표 1]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에 의한다. <개정 2021.11.04.>

## 제10조 (심사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)

- ① 가족 또는 친족, 그 밖에 학연, 지연 등 특수 관계로 심사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사위원은 제척된다.
- ②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될 시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.
-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의 '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'에 따른다.

## 제11조 (합격자 판정)

- ① 합격판정은 단계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판정한다. 다만 최종 지원자가 1명이거나, 학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결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전공적합성, 강의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다.
- ②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
- ③ <삭제 2021.11.04.>

## 제12조 (재임용)

- ① 강사의 임용은 1년 이상이 원칙이며,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"재임용 절차"를 보장한다.
- ② 재임용 절차에 합격한 강사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한다.
- ③ 단, 재임용 절차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, 신입생이 없는 경우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제13조 (재임용대상 통지)

재임용 대상 강사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

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(재임용 절차)

- ① 재임용 심사는 해당 계열 및 학과에서 진행한다.
- ② 강사의 재임용 조건은 [별표 2]에서 정한 재임용 평가표의 총점이 70점 이상이며, 심사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단, 재임용 평가표 총점이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1.11.04.>
- ③ <삭제 2021.11.04.>

#### 제15조 (재임용기간)

강사의 재임용 시기는 3월 1일과 9월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재임용 될 수 없다.

단,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.<개정 2022.04.12.>

#### 제16조 (신분)

- ① 강사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 학과 교원의 신분을 갖는다.
- ② 강사는 형의 선고,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#### 제17조 (의무)

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강의계획서, 성적평가 및 입력, 교육이수 등 학생교육을 위해 본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8조 (담당시간)

강사의 주당시간은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담당 과목 및 담당시간은 매학기 변경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주당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강의를 할 수 있다.

#### 제19조 (급여 및 퇴직금)

- ① 강사의 급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하며, 학기별 강의시수에 따라 본교 강사로 지급기준 내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강사의 1주 강의시간에 강의 연구 및 강의 이외 업무처리 소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.
- ③ 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매 학기마다 강의를 담당하고,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 (임용계약)

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, 임용기간, 급여, 강의시수, 재임용조건, 임용기간 만료

후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, 폐강 시에 임용계약을 취소하거나 급여 및 강의시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, 면직 사유, 기타 복무사항을 명기하여 [별표 3]에 의거하여 계약한다.

제21조 (겸직금지)

강사로 임용된 경우 계약기간동안 타 대학의 전임교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22조 (당연퇴직)

재임용에 탈락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.

제23조 (면직)

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 할 수 있다.

1. 폐강 등으로 인하여 담당과목이 없는 경우
2. 본 규정 제20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3. 본 규정 제21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

제24조 (임면에 관한 보고)

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(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)한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7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 (그 밖의 사항)

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,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7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시간강사 임용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부 칙(2021.11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0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10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<개정2021.11.04.>

##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(기초·전공심사용)

| 소속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| 교원자격기준<br>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, 부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심사 항목     |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심사 항목          |  | 심사점수  |
| 기초심사      | <del>X</del>               | - 전공영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 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전공<br>심사  | ①<br>최종학력   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  | - 박사졸업 (30점)<br>- 석사졸업 (27점)<br>- 학사졸업 (24점)<br>- 전문학사 (21점)   |   |
|           | ②<br>교육경력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| - 교육경력 5년 이상 (20점)<br>- 교육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(18점)<br>- 교육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(16점)<br>- 교육경력 1년 미만 (14점)         |   |
|           | ③<br>산업체경력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| - 산업체경력 5년 이상 (20점)<br>- 산업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(18점)<br>- 산업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(16점)<br>- 산업체경력 1년 미만 (14점)     |   |
|           | ④<br>최근 5년간<br>연구실적물<br>심사 | 10                | - 논문,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2편 이상인 경우 (10점)<br>- 논문,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1편 이상인 경우 (8점)<br>※ 학위논문 제외, 공저의 경우도 1편으로 인정 가능 |   |
|           | ⑤<br>발전<br>가능성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| -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(20점)   |   |
|           | ⑥<br>자격증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- 초빙분야 관련 자격증 (10점)  | (가점)  |
| <b>합계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100</b>        |  |   |

- 합격기준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함.
- 기초심사에서 모집전공과 지원자의 전공은 취득학위를 근거로 적합여부를 판정하며, 심사위원간 이견을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평가함.
- 전공심사에서 교육경력, 연구실적물 및 자격증(가점) 인정기준은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의토록 함.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|  |
| 평가결과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합격 <input type="checkbox"/> 불합격 |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|         |  |    |       |    |           |
|---------|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--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장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
[별표 2] 강사 재임용 평가표<개정2021.11.04.>

## 강사 재임용 평가표

| 소속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원자격기준      |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□, 부적합□   |      |
| 평가항목   | 항목배점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한도        | 취득점수 |
| - 수업기간 준수<br>※ 수업 미 준수 시 1건당 2점 감점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        |      |
| - 휴강 및 보강 준수<br>※ 휴강 및 보강 미 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        |      |
| - 강의평가 평점 90점 이상<br>- 강의평가 평점 80점 이상 ~ 90점 미만<br>- 강의평가 평점 70점 이상 ~ 80점 미만<br>- 강의평가 평점 50점 이상 ~ 70점 미만<br>- 강의평가 평점 50점 미만<br>※ 100점 만점 | 50<br>45<br>40<br>35<br>30 | 50점         |      |
| - CQI(수업개선) 보고서 작성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| 20점         |      |
| - 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학과기여도<br>※ 종합적으로 평가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        |      |
| <b>합계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100점</b> |      |

- 1) 재임용 기준 : 70점 이상(단, 기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)
- 2) 강의평가점수 : 100점 만점 기준이며, 해당 강사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.
- 3) 강사 재임용 평가는 심사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평가함.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  |            |
| 평가결과(재임용 여부) | □예    □아니요 |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|         |  |    |       |    |           |
|---------|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--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장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| 심사위원 소속 |  | 직위 | 심사위원  | 성명 | (인 또는 서명) |

